

# 2023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내 화장품·뷰티산업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차별화된 디자인 전략 수립 및 제품력 강화를 위하여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뷰티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 사업규모(‘23년) : 350백만원(경기도)
- 지원기관 : 경기도,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세부과제명(모집분야) :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 사업목적 : 뷰티·화장품 관련 디자인 분야 개발과제를 지원하여 도내 뷰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매출·수출 증진 도모
- 지원내용 : 뷰티제품 용기, 부자재, 패키지디자인, 브랜드 개발(BI, CI 등) 등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II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 \* 화장품법 제2조 2항 참조
  - 지원 대상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나, 개발 장소는 경기도 소재지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기업
  - 뷰티 제품기술개발과제 관리지침(2023.04) 6조 가)항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자격,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단,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주관단체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III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뷰티·화장품 관련 디자인개발비 및 시제품제작비 지원
- 지원기업 : 총 28개사
- 개발기간 : ‘23. 6월 ~ 12월
- 지원금 : 디자인개발 직접비 최대 10,000천원 (지원금의 20% 자부담 의무)  
(예) 지원금 10,000천원 + 자부담 2,000천원(지원금의 20%, 현금 기준)
  - 기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조정(8,000천원 ~ 10,000천원 내)
  - (A등급/10개사) 최대 10,000천원, (B등급/13개사) 최대 9,000천원, (C등급/5개사) 8,000천원
- 지원항목
  - 디자인개발 : 제품디자인(화장품용기, 부자재 등), 패키지디자인, 브랜딩(CI, BI 등) 개발 등 산업·시각디자인 관련 \*디자인전문기업(외부)의 전문용역비
  - \*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https://designfirm.kidp.or.kr>)에 등록된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보유한 개발사에 한함

- 시제품제작 : 시제품 목업(소프트, 디자인, 워킹 등), 재료비, 외주제작비, 장비임차료 등
- ※ 금형제작비의 경우 기업부담금에 한하여 예산편성 가능
- ※ 마케팅콘텐츠(홈페이지, 리플렛, 브로슈어 등) 지원 불가

#### IV 추진일정(안)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기업선정 및 협약체결	과제 수행	중간점검	최종보고	최종평가
4/10	4/10 ~ 4/28	5/1 ~ 5/26	5/29 ~ 6/2	6/5 ~ 12/4	9~10월	12/8	12/14 ~ 12/18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V 선발방법

- 선발내용 : 뷰티 디자인 개발과제 수행기업 28개사
- 선발기준 :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 서면/대면 평가

##### ○ 요건 검토

- 기업 자격 및 과제 적격성 요건 검토
- 기업 및 공장 소재지, 지원 제외사항, 사업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등 검토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법위반사항 검토
  - \* 감점사항 검토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적용법률(11개 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식품 등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도보)\_23-6호' 참조

##### ○ 1차 서면심사

- 평가자 : 외부심의위원회(뷰티, 디자인, 마케팅 등 외부전문가) 5인
-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평가내용 :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개발사항에 대한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 사업계획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정량적 평가

- 선발기준 : 서면평가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선발(42개사 내외)
  - \* 동점과제 처리기준 : 평가항목 가중치가 높은 항목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선정
- 2차 대면심사
  - 평가자 : 외부심의위원회(뷰티, 디자인, 마케팅 등 외부전문가) 3인
  -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평가방법 : 외부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인터뷰 심사
    - \* 기업별 10분 내외(제출된 사업계획서 중심 질의응답 / 별도 프리젠테이션 없음)
  - 평가내용 : 뷰티 디자인 개발 필요성, 계획 적정성, 예산 적정성 등 정성평가
  - 선발기준 : 대면평가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최종 선발(28개사, 예비3개사)
-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외부 심의위원회의 조정의견사항 및 지원금 결정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기업자부담금(보조금 지원액의 20%) 납부확인 후 협약 체결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조정이 어려울 경우 예비기업 차순위 기업 선정
  - 과제수행 : 2023. 6월 5일 ~ 12월 4일

## VI 신청·접수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3. 4월 28일(금) 17시 까지
-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전자메일 접수 ( [js35ru@gsmba.kr](mailto:js35ru@gsmba.kr) ), 아래 3개파일 제출
  - ① PDF파일 : 하단 신청구비서류 일체(연번 1~14번)를 **연번순으로 정렬하여** 제출  
(파일명: 디자인개발\_기업명.pdf)
    - \*반드시 **1개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아래 ②,③번서류 포함)
  - ② 한글파일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별첨1) (파일명: 디자인개발\_기업명.hwp)
  - ③ 한글/PDF파일 : 법위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파일명: 법위반동의서\_기업명.hwp/pdf)

○ 신청 구비서류

연번	구비서류	비고	제출파일형식	
1	[서식1]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필수	①PDF  * 1~14번 문서 순서대로 병합하여 1개파일로 제출	
2	참여자격 증빙서류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확인서)			
3	[서식2] 기지원, 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4	[서식3]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6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7	재무제표 사본(직전년도) *22년도 미작성시 21년도 제출가능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서식4]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0	[서식5] 범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협약서			
11	기술력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ISO인증 등)			선택 (해당시 제출)
12	공장등록증명원			
13	가점항목 증빙서류 *참고1_기업인증			
14	[서식6] 신규신청 확인서			
별첨1	[서식1]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필수	②한글	
별첨2	[서식4]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한글 또는 pdf	

- \* 전자메일 접수시 첨부파일은 제출파일형식에 따라 총 3개파일(①,②,③)로만 전송할 것  
(그 외 압축파일, 개별파일 또는 웹하드 형태로 전송시 접수불가)
- \* 연번7 재무제표의 경우 공인회계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로 제출 가능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기간 경과시 미제출 간주)

\* 접수마감일( 4/28, 17시)까지 필수제출서류 미비 및 필수사항의 공란의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제출 요망

## VI 기타 안내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기업 및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신청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지원사업 참여기간 중 본사 및 공장이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남정숙 주임

- Tel: 031-8064-1084 / Fax: 031-205-4700 / Mail: js35ru@gsmba.kr

【붙임】세부평가 기준표

## 뷰티 디자인 개발과제 세부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b>요건 검토</b>	자격요건 충족여부	1)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 적정성 2)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3) 지원제외기업 대상 적/부 확인	
	사업참여 제한여부	1) 경기도 사업 참여 제한 여부(적/부)	
	법위반사실 감점 적용여부	1) 법위반사실여부 검토, 해당시 총점의 20% 감점 적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b>1. 재무건전성 (15)</b>	1.1.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5	100%미만(5), 100%이상~200%미만(3), 200%이상~30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1.2.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5	100%이상(5), 50%이상~100%미만(3), 0%이상~50%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1.3.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5	10%이상(5), 5%이상~10%미만(3), 2%이상~5%미만(1) * 평가기준 미달 점수는 0점 부여
<b>2. 기업경쟁력 (15)</b>	2.1. 추진조직 체계	6	수행조직 구성 적정성, 참여계획 타당성, 추진의지 등
	2.2. 매출신장 가능성	6	대내·외 시장규모, 매출시장크기, 사업화 전망 등
	2.3. 유사사업 추진실적	3	해외마케팅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당 1점)
<b>3. 사업계획 적정성 (40)</b>	3.1. 디자인 개발 필요성	15	자사제품 사전분석 및 준비성, 디자인 개선·개발 필요 여부 등
	3.2. 디자인 개발계획 적정성	10	개발계획 적정성, 추진방법 체계성, 의뢰 기업 선정방법 적정성 등
	3.1. 디자인 개발과제 예산 적정성	15	사업비 예산편성 적정성 등
<b>4. 기대효과 (30)</b>	4.1. 사회적 기대효과	10	일자리 창출효과, 사회적 효과 우수성 등
	4.2. 경제적 기대효과	10	매출·수출 목표설정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4.3. 디자인개발 결과물 활용계획	10	디자인 개발 결과물 활용계획 적정성
<b>합 계</b>		100	
<b>평가가점 (10)</b>	기업인증	5	* [참고1] 가점사항의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신규 신청기업 (최근3년 기준)	5	* [서식4] 신규신청 확인서 제출 필수, 최대 5점 부여
<b>총 계</b>		110	

【참고1】가점사항

연번	가점 사항	확인	가점
①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 약정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서	1점
②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점
③	ISO GMP 또는 식약처 GMP(CGMP) 인증 획득 기업	화장품GMP 인증서	1점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⑤	경기도에서 선정한 수출프론티어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서	1점
⑥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점
⑦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1점
⑧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1점
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10조 및 제11조 2항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1점
⑩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1점

\* 가점사항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 미비 혹은 신청시 유효한 서류가 아닐 경우 가점 인정 불가